

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,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 구성·운영 내용 개정 및 신설(안 제4조~제4조의3)
- 상위 법령 조항 개정 사항 반영(안 제17조, 안 제22조)
- 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규정 신설(안 제32조)
- 사용료·대부료 감액조정 대상 범위 확대(안 제3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제16조, 제21조, 제27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제7조의2, 제16조, 제34조
 - 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
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4조의2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,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 제4조의3까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“공유재산심의위원회”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,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32조제3항에서 「관광진흥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34조에서 당해 사용·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の使用료 또는 대부료가 ‘100분의 10’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100분의 70을 적용하는 것을 ‘100분의 5’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감액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“공유재산심의위원회” 구성·운영 사항 신설 및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규정의 신설 등 상위법의

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
안건으로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
하다고 사료됨.